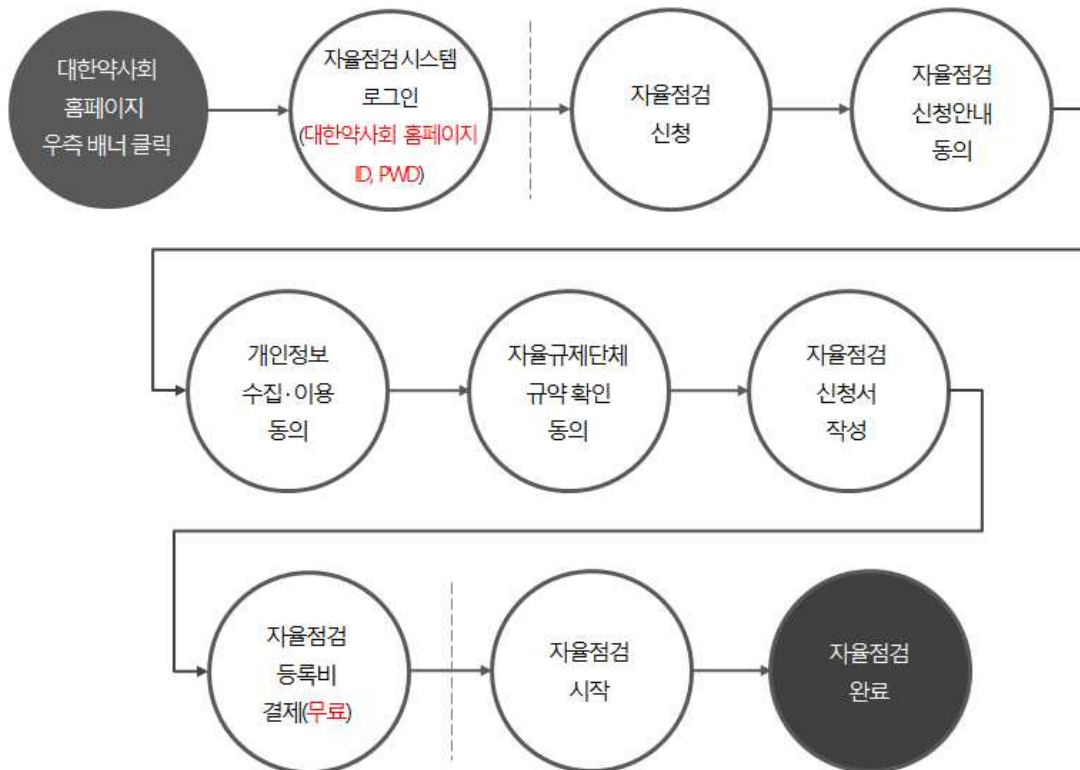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 및 FAQ

(2023.9.14, 대한약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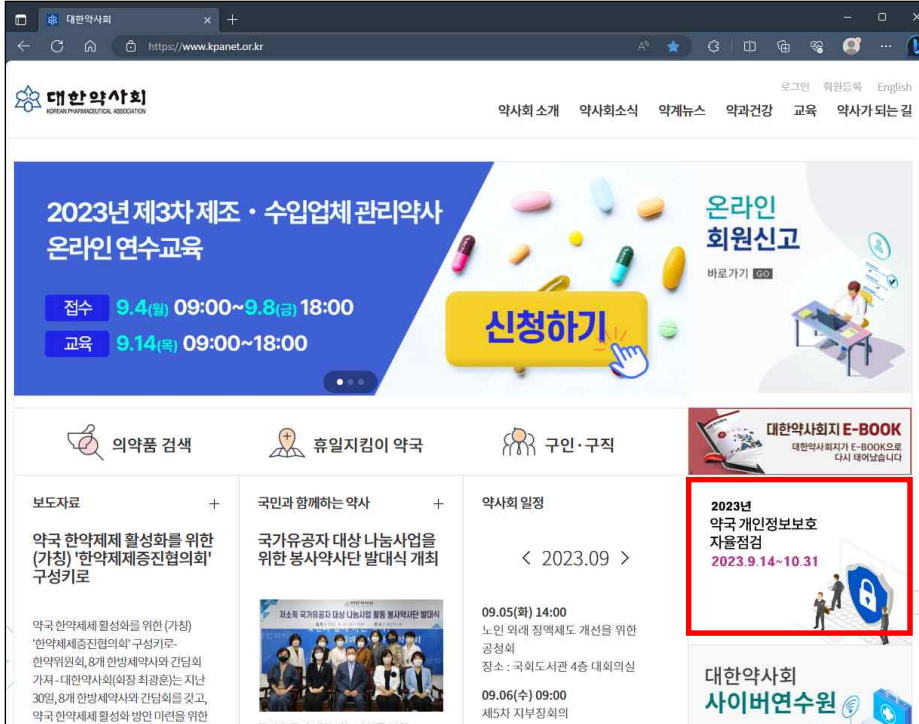
- ▣ 개요 :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회원약국 보호와 개인정보 수준 및 인식 향상을 위하여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활동 추진
- ▣ 기간 : 2023.9.14 ~ 2023.10.31. (1.5개월)
- ▣ 대상 : 자율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정보 취급 및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약국
- ▣ 절차 :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을 통해 실시



▣ 자율점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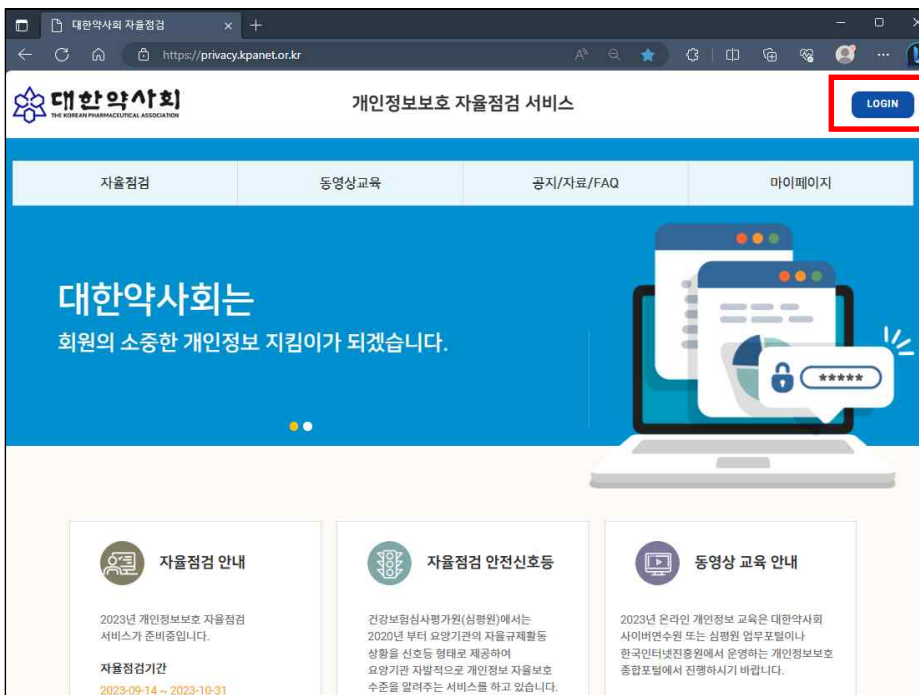
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로그인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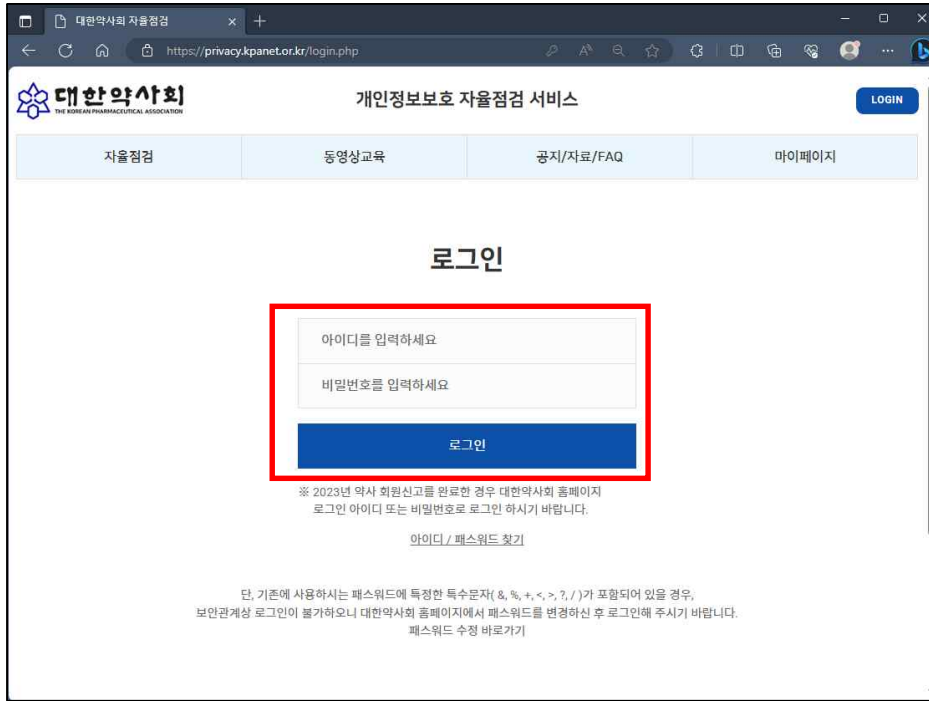
>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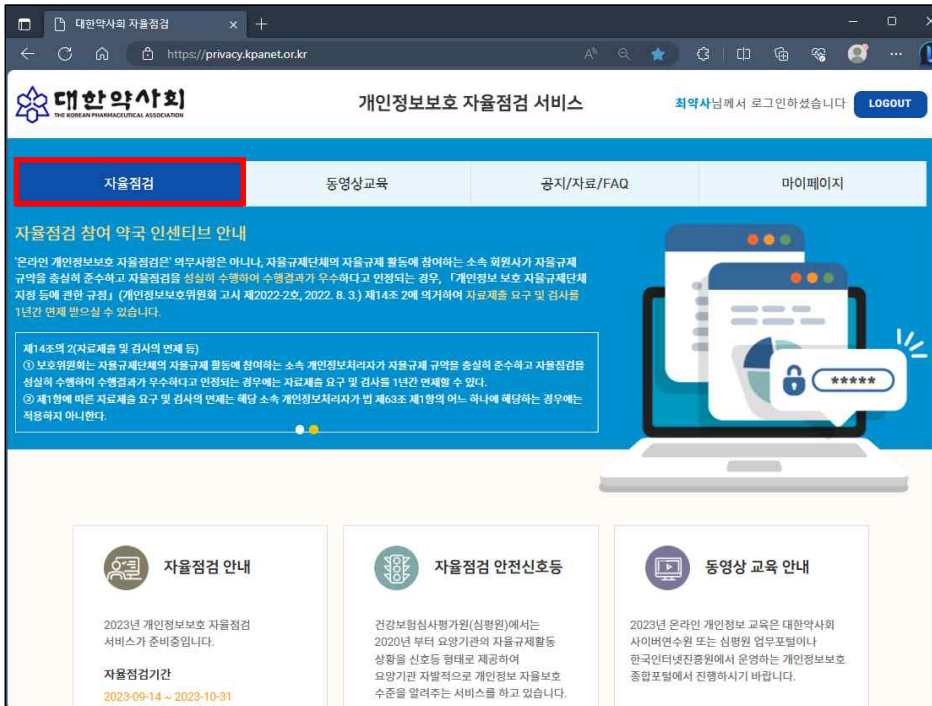
②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로그인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ID / 패스워드로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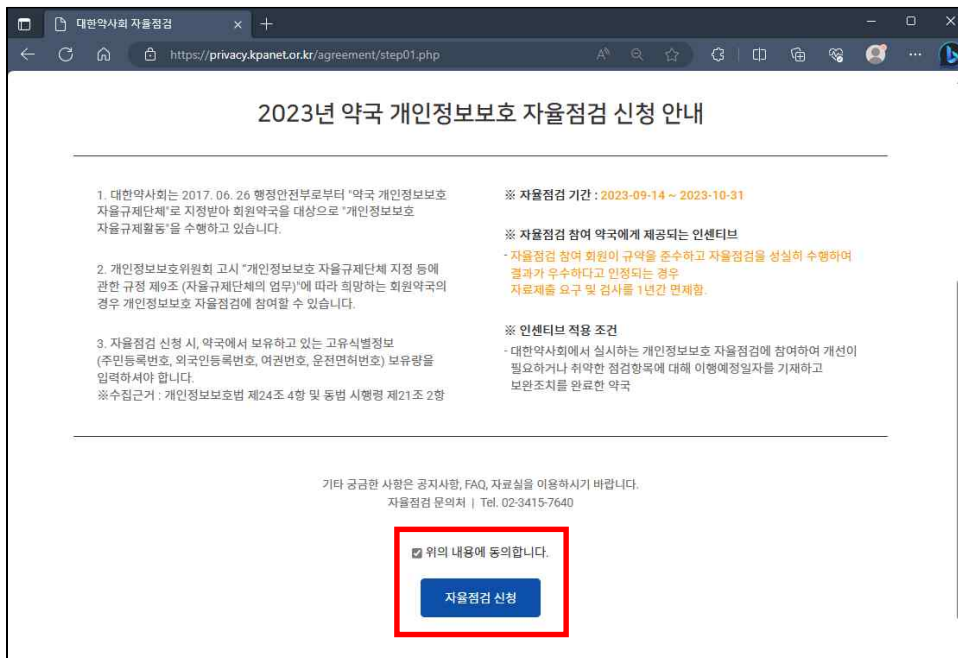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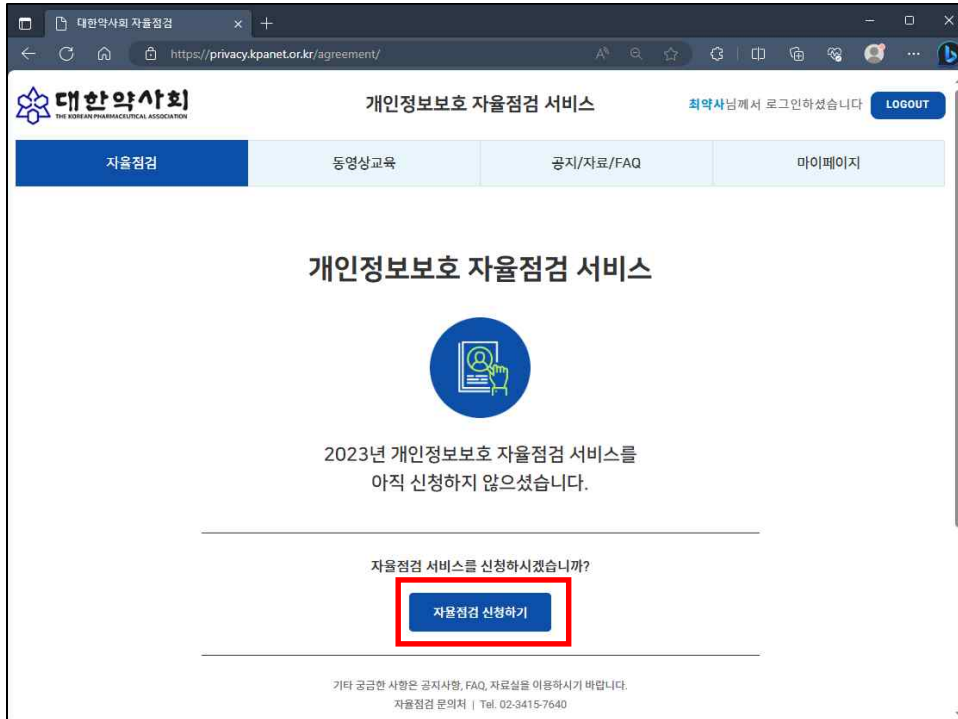




> 자율점검 메뉴 (클릭)



3 자율점검 신청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01 서비스안내 02 개인정보 수집동의 03 규약 동의 04 신청서 작성 05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 06 신청완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약사 회원관리 및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를 받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방법 :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업무에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대한약사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동의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경우 내부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정보는 관련 정보기관에도 제공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수행 결과 검토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요양기관기호, 약국명,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주소, 이메일, HP,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HP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신청 정보 등
-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자율점검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그 밖에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 하단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단계 > 취소

5 자율규제단체 규약 동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규약 확인 및 동의

아래 규약전문은 대한약사회와 참여 약국간의 자율규제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자율점검 수행, 결과보고, 현장조사 기관 선정 등에 대한 규약입니다. 반드시 등 규약에 동의하여야만 자율점검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약은 관련 규정에서 따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이하 "본회"라 한다)와 그 회원사가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자율규제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원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제3항,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③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0-3호)(개정 2019. 4. 11)(개정 2020. 6. 29)(개정 2021. 4. 16)
2.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정보주체"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율규제단체 규약 동의

▶ 규약전문 다운로드

- 1) PDF 파일 다운로드
- 2) 한글파일 다운로드
- 3) 한글 뷰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 3) PDF 뷰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다음단계 > 취소

6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정보는 자율점검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점검항목 선택정보

조제, 복약상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홍보용 문자발송, 회원가입 등)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회원가입 등)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약국 청구프로그램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고객관리프로그램 등)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입력

-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의미하며, 중복자를 제외한 보유량을 기재하면 됩니다.
 -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보유량만 기재하세요.
 -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수집하며,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2년마다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정성 점검 대상이나, 자율규제점검에 참여한 기관은 자율점검 결과로 대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input checked="" type="radio"/> 10,000명 미만 <input type="radio"/> 10,000명 ~ 100,000명 미만 <input type="radio"/> 100,000명 이상		
주민등록번호 보유량	<input type="text" value="9000"/> 건	외국인등록번호 보유량	<input type="text" value="80"/> 건
여권번호 보유량	<input type="text" value="0"/> 건	운전면허 보유량	<input type="text" value="0"/> 건

✓ 점검항목 선택정보

“아니오” 선택 시 점검이 제외되어 전체 점검항목 수가 조정됩니다.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결과	점검제외 항목
조제, 복약상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홍보용 문자발송, 회원가입 등)	아니오	(7항목) 1.1.1, 1.1.2 1.2.1, 1.2.2, 1.2.3 2.1.1, 2.2.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4항목) 2.3.1, 2.3.2 2.3.3, 2.3.4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2항목) 3.2.7, 3.3.5
약국 청구프로그램 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고객관리프로그램 등)	아니오	(5항목) 3.2.8, 3.2.9 3.3.1, 3.3.3, 3.3.4

■ 약국 청구프로그램 외 개인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 여부

청구소프트웨어 보안 기능 인증제 시행(2019.8.1)으로 청구소프트웨어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되며,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적인 조치가 필요 없는 5개 항목 점검 제외

√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입력

- > 약국에서 수집한 전체 고유식별정보수에 맞는 구간 선택 후 해당 보유량 입력
(약국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이며, 보유량은
약국 청구프로그램 / 고객관리 메뉴의 전체고객(환자) 수 기재)

7 등록비 결제 (0원, 2023년도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약국만 참여 가능)

> 다음단계 (클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01 — 02 — 03 — 04 — 05 — 06

서비스안내 개인정보 수집동의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 신청완료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 후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에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 자율점검 등록비를 결제해야 합니다.
동 자율점검 등록비는 협회가 자율점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자율점검 사업 관련 교육, 행정 업무 등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가 되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능하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정보

자율점검 등록비	0 원
결제방식	

※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은 취소처리되며, 처음과정부터 다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단계 > 취소

8 신청 완료

> 자율점검 진행 (클릭)

대한약사회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테스트남께서 로그인하셨습니다 LOGOUT

자율점검 현장지원 컨설팅 동영상교육 공지/자료/FAQ 마이페이지

01 — 02 — 03 — 04 — 05 — 06

서비스안내 개인정보 수집동의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 신청완료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율점검 진행으로 이동하신 후 자율점검을 진행하세요.

자율점검 진행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지사항, FAQ,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문의처 | Tel. 02-3415-7640

자율점검

>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 (클릭)

대한약사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자율점검 신청내역

신청일자	접수번호	원료일자	진행상태	점검결과 건수			
				양호	미흡	해당없음	미점검
2023-09-06	Z309068A219		진행	0	0	0	22

자율점검 신청 취소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

결제내역

결제방식	결제금액	환불금액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상태	결제일시	영수증
면제	0원	0원	0원	결제완료	2023-09-06 13:24:52	

> 자율점검 전체항목

자율점검 전체항목

* 목적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자율점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모든 항목 점검 후에는 "양호 및 미흡"을 클릭해야 자율점검이 완료됩니다.
 * "양호 및 미흡" 이후에도 자율점검기간 내에는 점검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 "양호 및 미흡" 시 점검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완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내 메시지에 따라 재점검 하신 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직 점검하지 않은 항목 및 점검한 항목이 올바르게 않은 경우 아래의 점검 목록에서 컬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점검 항목 () 올바르게 않은 항목 () 완료 항목 ()

점검결과 인쇄 | 점검결과 역분자장 | 완료 및 제출

순번	자율점검내용	점검결과	증빙자료 보유여부	이행예정일자
1	1.3.1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시 한시(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받고 있는가?			
2	1.4.1 수집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			
3	1.4.2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4	1.4.3 임시파일 및 출력자료 등은 목적달성 후 즉시 파기 하고 있는가?			
5	1.4.4 법령(전자상거래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 보관하고 있는가?			
6	2.3.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7	2.3.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장소에 정보주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필수기록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가?			
8	2.3.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 하는가?			
9	2.3.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고 있는가?			
10	2.4.1 위탁계약 시 문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하였는가?			
11	2.4.2 수탁업체에 대한 교육 및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12	2.4.3 위탁에 관한 사실을 접수실, 대기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가?			
13	2.5.1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가?			
14	2.5.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가?			

> 점검방법

1. 점검항목이 약국에 해당하는지 확인

1-1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우측 점검결과에서 '해당없음' 선택
- > 다음 점검항목으로 이동(상/하단 '다음' 버튼 클릭)

1-2 해당되는 경우

- > 점검기준 및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우측 점검결과에서 '양호' 또는 '미흡' 선택
 - > '양호'인 경우 증빙자료 보유여부 선택
 - > '미흡'인 경우 증빙자료 다운로드 및 이행예정일자 선택
- > 다음 점검항목으로 이동(상/하단 '다음' 버튼 클릭)

※ 모든 점검 완료 후 우측상단의 '완료및제출' 클릭

※ 점검결과 선택방법

점검결과	선택방법
양호	점검항목이 약국에 해당되며,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한 조치가 마련되고 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 선택
미흡	점검항목이 약국에 해당되나 관리실태가 부실하거나, 대책마련이 안된 경우 선택
해당없음	점검항목이 약국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선택

Q1.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 자율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
- 대한약사회 회원신고를 필한(승인 완료) 회원약국
- 개인정보 취급(처방전 수집, CCTV 설치 등) 약국

※ 자율점검 참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됩니다.

Q2.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은 어떻게 하나요?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을 통해 실시합니다.

[자율점검 절차]

- 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전 우측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또는 팝업창 내 링크) 클릭
- ②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③ 자율점검 메뉴 > 자율점검 신청 > 규약 동의 > 신청서 작성 >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

※ 2023년 점검항목 수 : 총 47개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사전질문(점검항목 선택정보)에 따라 점검항목 수 조정되고, 약국에서 보유한 고유식별정보 보유수에 따른 유형에 따라 조정되며, 점검항목 중에서 약국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으로 점검할 수 있음. 다만,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필수점검항목의 경우 ‘해당없음’ 선택이 불가함)

Q3.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는?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ID/비밀번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 회원신고 미완료(미승인) △ 홈페이지 ID/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입니다.

- ▷ 비회원 : 회원신고 완료(승인 완료) 후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통해 ID/비밀번호 발급 후 접속
- ▷ 회원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통해 ID/비밀번호 발급
- ▷ ID/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 홈페이지 ID/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 후 접속

Q4.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기재 방법은?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약국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는 처방전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로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및 외국인등록번호)로서 보유량은 누적된 총 수입니다.

따라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된 전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숫자를 약국청구프로그램 / 고객정보(또는 고객관리) 메뉴에서 확인 후 기재하면 됩니다.

※ 전체 환자(고객)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문의 (예. 팜IT3000(약학정보원), 유팜(유비케어) 등)

Q5. 자율점검 신청 시 등록비 결제에 관하여 ?

자율점검 신청단계의 “등록비 결제”는 비회원의 자율점검 참여 시 등록비 부과를 위해 탑재된 기능이나, 본회는 회원신고를 필한(승인) 회원약국만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비는 0원입니다.

Q6.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접속 등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온라인 자율점검 접속은 구글 크롬 또는 MS엣지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
MS 인터넷익스플로어는 기술지원이 중단되어 접속 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 설치
다음(www.daum.net) 또는 네이버(www.naver.com) 에서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검색, 다운로드 후 설치

Q7.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약국 요양기관기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대표자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자율점검 신청 시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 등록된 약국정보(2023년 9월 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약국정보)를 비교하여 신청됩니다. 9월 1일 이후 약국을 신규 개설하거나 또는 데이터 오류가 있는 경우 자율점검 상담실(02-3415-7640)에 연락주시면 약국등록 및 수정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9.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 관련 문의처는 ?

자율점검 시 오류, 궁금한 사항은 자율점검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콜센터 ☎ 02) 3415-7640